

## 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 알리안츠 PIMCO 분산투자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\_재간접형)(H)

2. 변경일: 2017.07.18

3. 변경 내용 :
- 1) 클래스 추가(P1, Pe1, Pe2)
  - 2) 클래스 명칭 변경 (C(P) → P2)
  - 3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

<집합투자규약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3 조 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<p>①~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7. &lt;생략&gt;</p> <p><b>8. &lt;신설&gt;</b></p> <p><b>8. Class C(P)</b></p> <p>9. Class S</p> <p><b>11. &lt;신설&gt;</b></p> <p><b>12. &lt;신설&gt;</b></p>	<p>①~② &lt;좌 동&gt;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7. &lt;생략&gt;</p> <p><b>8. Class P1 수익증권:</b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p> <p><b>9. Class P2</b></p> <p><b>10. &lt;좌 동, 순번 변경&gt;</b></p> <p><b>11. Class Pe1 수익증권:</b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온라인(On-Line)전용 수익증권</p> <p><b>12. Class Pe2 수익증권:</b>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온라인(On-Line)전용 수익증권</p>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7. &lt;생략&gt;</p> <p>8. &lt;신설&gt;</p> <p><b>8. Class C(P)</b></p> <p><b>9. Class S</b></p> <p>11. &lt;신설&gt;</p> <p>12. &lt;신설&gt;</p>	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7. &lt;좌 동&gt;</p> <p><b>8. Class P1</b></p> <p><b>9. Class P2</b></p> <p><b>10. &lt;좌 동, 순번 변경&gt;</b></p> <p><b>11. Class Pe1 수익증권</b></p> <p><b>12. Class Pe2 수익증권</b></p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39 조(보수)	①~② <생략> ③ 1.~7. <생략> 8. <신설> <b>8. Class C(P)</b> <b>9. Class S</b> 11. <신설> 12. <신설>	①~② <좌 등> ③ 1.~7. <좌 등> <b>8. Class P1 수익증권</b> <b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3.5</b> <b>9. Class P2</b> <b>10. &lt;좌 등, 순번 변경&gt;</b> <b>11. Class Pe1 수익증권</b> <b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1.7</b> 12. Class Pe2 수익증권 <b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4.9</b>
제 51 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 <b>(Class C(P))</b>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 <b>(Class P2)</b>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부칙	(신설)	부 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 년 7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<투자설명서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<신설>	<b>종류 P1 수익증권</b> -판매회사 보수: <b>0.35%</b> <b>종류 Pe1 수익증권</b> -판매회사 보수: <b>0.17%</b> <b>종류 Pe2 수익증권</b> -판매회사 보수: <b>0.49%</b>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(2) 종류별 가입자격 <신설>	(2) 종류별 가입자격 <b>Class P1 수익증권:</b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<b>Class Pe1 수익증권:</b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온라인(On-Line)전용 수익증권 <b>Class Pe2 수익증권:</b>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온라인(On-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	Line)전용 수익증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신설>	<b>종류 P1 수익증권</b> -판매회사 보수: <b>0.35%</b> <b>종류 Pe1 수익증권</b> -판매회사 보수: <b>0.17%</b> <b>종류 Pe2 수익증권</b> -판매회사 보수: <b>0.49%</b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직전 회계연도 기준	최근 회계연도 기준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직전 회계연도 기준	최근 회계연도 기준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수익률 나. 연도별수익률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현황	- - 직전 분기말 기준	2017.06.30 기준 2017.06.30 기준 최근 분기말 기준